

## 감리지적사례 FSS/2106-6 :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종속기업 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7.1.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인 B사의 주식에 대해 ‘10년 말까지 종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으로 평가해왔다. 회사는 ’11년 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도입하면서 별도재무제표에 표시된 B사 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전환일(‘10.1.1) 당시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함에 따라 B사 주식의 ’11년 말 장부금액은 대폭 증가하였다(B사 주식은 전환일 당시 주가가 급등한 상태였음).

전환일(‘10.1.1) 이후 B사 주식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공정가치도 장부금액을 크게 하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회사는 B사 주식에 대해 ’12년, ’13년 및 ’17년 외부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손상검토를 각각 수행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손상차손 일부를 인식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았고, 손상검토를 수행한 회계연도(‘12년, ’13년, ’17년)에도 회수가능액 산정시 합리적인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추정치를 사용함으로써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B사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제조회사로 주력제품의 매출이 크지 않고 연구개발비 등 판단비 지출로 ‘11년~’17년 매년 적자가 발생하였고, 공정가치(시가총액)도 장부금액 대비 40~70% 수준으로 지속 낮았고,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상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르면 보고기간마다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매년 예상 실적을 크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B사에 대해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11년, ’14년~’16년에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손상검토 수행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해야 함에도, '12년, '13년 및 '17년 손상검토 수행 시 B사가 개발 중인 제품이 임상1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초기단계임에도 해당 개발제품들이 향후 100% 개발에 성공하여 라이선스 아웃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B사의 파트너사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향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임상1상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 할 경우 파트너사는 임상용 제품을 B사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약정을 했으나 공급단가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오리지널의약품의 85% 수준에 임상용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바이오시밀러는 품목허가 후 출시되더라도 오리지널의약품의 70% 수준 이내로 약가가 책정되는 게 일반적임에도 임상중인 제품을 공급하면서 85% 수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과도한 추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사는 B사가 기존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과거 5년간 매출이 22억에 불과했음에도 향후 5년간 38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감리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도입하면서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으로 표시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가 아닌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적용한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10년 중반부터 B사 주가가 회사의 장부금액을 지속 하락하고 있었고 '11년 말에는 그 하락폭이 48% 수준에 달함에도 결산기말 현재 주가가 장부금액을 하회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그리고, '12년~'17년에도 B사 주식은 장부금액을 지속 하회하고 있었으나, 감사인은 B사의 순자산금액이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했고 주가도 전년 대비로만 보면 유의적인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회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은 하락하여 B사의 지분가치는 하락하고 주가는 장부금액 대비로 비교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전년 대비로만 비교하는 등 감사절차에 소홀하였다.

#### 5. 시사점

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매 보고기간마다 기업회계기준서상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외부평가를 통해 손상검토를 수행할 경우 막연히 향후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지 말고 실적 예상시에는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하여야 한다.